

의안번호	2213998
의 퇴 인	안태준의원
회 답 일	2025.12.8.
추 계 번호	25B5987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8조의2 신설 (통합조정회의)	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관계 기관 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음	재량규정
2	안 제27조제6항 신설 (토지등의 수용 등)	공공주택사업자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¹⁾ 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때에 일정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이내에 토지등의 소유자와의 협의를 성립하여 토지등을 취득 또는 사용하는 경우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음. 다만,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1조(제27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를 위반하여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감정평가법인등의 행위를 방해한 자와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협의 계약에서 정한 이행기간까지 토지 또는 물건을 인도하거나 이전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함(제6항 신설)	재량규정 의무규정

II 미첨부 근거규정 및 상세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근거규정
1	안 제18조의2(통합조정회의)	• 미대상: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 등이 참여하는 통합 조정회의를 개최할 경우 행정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, 현행 국토교통부 내 경상경비 사업비 내에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별도의 추가재정소요와는 관계가 없음
2	안 제27조제6항 신설 (토지등의수용 등)	• 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제가 어려운 경우

1) 제16조(협의)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,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. 상세사유

-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가 토지등 소유자와의 협의가 일정 기간 이내에 성립하는 경우 해당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보상액의 일정 비율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, 보상액이 가산 지급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비가 증가됨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
 - 그런데 개정안에서 보상액에 가산하여 지급하는 비율, 지급방법 등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사업계획과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어 불확정적이고, 사업지구별로 일정 기간 내 협의가 성립하게 될 물량, 보상단가 등을 예측하기 곤란하므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산하는 데 한계가 있음
-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개정안에 따른 재정소요의 변화를 현 시점에서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, 개정안은 「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」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

III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경제비용추계과	문지은	김신애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문지은	02-6788-4645	mtsophia@assembly.go.kr